

대전지방법원 2023. 8. 30 선고 2022나107867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고, 피항소인 겸 부대항소인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율지

담당변호사 강구현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한래현

피고, 항소인 겸 부대피항소인

B

변 론 종 결 2023. 7. 5.

판 결 선 고 2023. 8. 30.

제1 심판결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22. 3. 30. 선고 2021가단109673 판결

주 문

1. 이 법원에서 변경한 원고의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 가. 피고와 C 사이에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20. 3. 2. 체결된 임대차계약을 취소한다.
 - 나. 피고는, 1) C에게 별지2 기재 채권을 양도하고, 대한민국(소관: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세입세출 외 현금출납공무원)에 대하여 위 채권에 대한 양도통지를 하고, 2) 원고에게 17,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 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 항 소 취 지 , 부 대 항 소 취 지

1. 청구취지와 부대항소취지

주문과 같다(원고는 이 법원에서 부대항소를 하면서 청구취지를 변경하였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3쪽 아래에서 6행부터 4쪽 6행까지 부분을 아래 2항과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다.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채무자가 악의라는 점에 관하여는 취소를 주장하는 채권자에게 입증책임이 있으나, 수익자가 악의라는 점에 관하여는 입증책임이 채권자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수익자 자신에게 선의라는 사실을 입증할 책임이 있으며, 채무자의 재산처분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할 경우에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음을 인정함에 있어서는 객관적이고도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 등에 의하여야 하고, 채무자나 수익자의 일방적인 진술이나 제3자의 추측에 불과한 진술 등에만 터 잡아 사해행위 또는 전득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다고 선뜻 단정하여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15. 6. 11. 선고 2014다237192 판결 등 참조).

피고는 C에게 임대차보증금 4,000만 원을 지급하고 C과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선의라고 주장하나, 피고와 C의 인적관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피고가 선의임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악의 추정이 반복된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라. 취소와 원상회복

1) C이 채무초과 상태에서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것은 채권자인 원고에 대한 관계에서 책임재산을 감소시키는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피고의 사해의사는 추정되므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취소되어야 한다.

2)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피고가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른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청구채권으로 하여 배당요구를 하고 1순위 소액임차인으로서 1,700만 원, 3순위 임차인으로서 1,473,492원을 배당받는 것으로 배당표가 작성된 사실, 피고는 위 배당금 중 압류금지채권에 해당하는 1,700만 원을 수령하였으나 나머지 1,473,492원은 배당금출급청구권에 대한 가압류결정으로 인하여 현실적으로 수령하지 못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피고는 채권자취소권의 행사에 따른 원상회복으로서 ① C에게 별지2 기재 채권을 양도하고, 대한민국(소관: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세입세출 외 현금출납공무원)에게 위 채권양도 사실을 통지할 의무가 있고, ② 원고에게 1,7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이 법원에서 변경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여야 한다. 원고가 이 법원에서 변경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 판결을 위와 같이 변경한다.

재판장 판사 김선용, 판사 김주연, 판사 조길상

별지1

부동산의 표시

[1동의 건물의 표시]

천안시 동남구 D에 있는 E 아파트 F동

도로명주소 천안시 동남구 G

철근콘크리트구조(철근)콘크리트지붕 15층

지1층 53.456㎡

1층 480.224㎡

2~15층 461.824㎡

[대지권의 목적인 건물의 표시]

천안시 동남구 D 대 30,818㎡

[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

H

철근콘크리트구조 84.984㎡

[대지권의 표시]

소유권대지권 30,818분의 44.7993. 끝.

별지2

채권의 표시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1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서 작성된 배당표에 기하여 피고가 대한민국(소관: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세입세출 외 현금출납공무원)으로부터 지급받을 배당금 1,473,492원의 배당금출급청구권. 끝.

